

2025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[희망사다리 I 유형] 시행계획(안)

2025. 2.

"계층사다리를 이어주는,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장학재단"

학 생 진 로 장 학 부



목 차

I. 사업개요 1

- 1. 추진 목적 1
- 2. 사업 개요 1

II. '25년도 주요 개선 사항 2

- 1. 저소득층 학생 선발 우대 제도 신규 도입 2
- 2. 미성년자 장학생 보증 보험 가입 추진 2
- 3. 장학생 수혜 제한 기준 강화 2
- 4. 의무종사 심사 기준 강화 2

III.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 일정 3

- 1.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3
- 2. 장학금 신청 및 대학별 인원배정 4
- 3. 장학생 선발 5
- 4. 장학생 의무사항 7
- 5. 사후관리 8
- 6. 추진일정 9

**[별첨] 2025년 중소기업 취업연계(희망사다리 I 유형) 장학사업
업무처리기준**

I 사업 개요

1 추진 목적

- ☐ 중소·중견기업 인력 수요와 고학력 구직자 간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함

2 사업 개요

- ☐ 사업기간 : '25. 3월 ~ '25. 12월(신청기간 포함)
- ☐ 사업규모 : 44,497백만원

 * 사업운영비 : 1,672백만원 별도(Ⅰ·Ⅱ 유형 공통)
- ☐ 지원대상 :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학 3학년 이상, 전문대학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

 ※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(대학), 제2호(산업대학), 제4호(전문대학)에 해당하는 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, 과학기술원, 전통문화대, 한국농수산대,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지원 가능
- ☐ 지원금액 : 등록금 전액, 취·창업 지원금 200만원(학기별)

<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지원 실적 >

구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
금액(백만원)	44,607	46,046	44,497	48,406	44,097
건수(건)	9,261	9,382	9,105	9,687	8,616
인원(명)	6,045	5,902	5,540	5,415	5,104

Ⅱ '25년도 주요 개선 사항

1 저소득층 학생 선발 우대 제도 신규 도입

☐ 저소득층 선발 우대 제도 신설

- 신규장학생 신청 시 저소득층 증빙자료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)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 선발 가산점 적용

※ 저소득층 우대를 위한 가산점 상세기준은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름

※ 저소득층 증빙자료 인정 상세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고

2 미성년자 장학생 보증 보험 가입 추진

☐ 미성년자 장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후 보증보험 가입 진행

2024년	2025년
■ 미성년자 보증보험 가입제외(예외인정)	■ 미성년자 보증보험 가입 ○ 법정대리인 동의 후 보험 가입

3 장학생 수혜 제한 기준 강화

- ☐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I·II 유형 수혜자 중 장학금 반환 사유(학적변동, 의무종사 미이행 등)가 발생하였으나, 미반환으로 환수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타 유형 장학금 신청 제한 추진

4 의무종사 심사 기준 강화

☐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 확대 추진

-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 또는 창업한 기업은 의무종사 인정 제외 추진

2024년	2025년
■ 부모기업 의무종사 인정 제외	■ 가족기업 의무종사 인정 제외 (부모기업, 배우자기업, 자녀기업 등)

☐ 의무종사 창업지원형 매출액 인정 기준 현행화

- 2025년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62호, '25년 765,444원)을 현행화를 통한 의무종사 심사 기준 강화

Ⅲ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일정

1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

- (지원대상)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 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*에 재학 중인 자 (대학 3학년 이상, 전문대 2학년 이상)

* (사업 참여대학) 사업 참여 가능 대학** 중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

** (사업 참여 가능 대학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(대학), 제2호(산업대학), 제4호(전문대학)에 해당하는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, 과학기술원, 전통문화대, 한국농수산대, 한국에너지공과대학

-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,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(신·편입생, 재입학생은 성적심사 제외)
-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
-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
 - 단,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기수혜대학 학적 상태가 졸업으로 확인되어야 하며, 전공심화·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
- (지원내용) 등록금 전액, 취·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

- 등록금 : 학기당 등록금 전액
 -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
 - 장학금 수혜 횟수(학기)에 비례하여 중소·중견기업에 의무종사해야 함
- 취·창업지원금 : 학기당 200만 원
 -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된 취·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·창업지원금 미지급

<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유형 >

취업지원형	창업지원형
중소·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	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

<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 I 유형) 운영 절차 >



2 장학금 신청 및 대학별 인원배정

- (장학금 신청) 학기별 참여대학 모집 후, 해당 대학 재학생에 한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신청 접수
 - 장학금 신청 시,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온라인 사전 교육 및 진단평가 필수 진행
 -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 신청 불가
- (인원배정) 우선 배정인원 수요 및 대학별 신청 학생 수를 고려하여 신규장학생 선발 인원 배정
 -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및 학·석사 연계과정 학생 수요 우선 배정
 - 장학유형별(취업지원형, 창업지원형) 인원배정은 유형간 신청인원 비율로 배정하되, 개별 유형 최소 배정비율은 10%*로 함
 - * 유형별 신청인원 비율이 미달할 경우 최종 배정 비율은 변동 가능
 - 잔여 배정인원은 일반대와 전문대 50:50으로 할당**하고, 신청자 비율에 비례하여 대학별 인원배정

** 학제별·유형별 신청자 수가 배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인원 조정 가능

3 장학생 선발

□ (신규장학생) 학생성적과 중소기업 취·창업 의지를 평가하여 대학 별로 장학생을 추천하고 재단 심사 후 최종 선발

○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 별도 기준에 포함하여 마련

* 단,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 기준으로 사용 불가(저소득층 우대 시에만 인정 가능)

< 중소기업 취업연계(희망사다리) 장학생 추천 기준(예시) >

구분	학업성적		학생 취업·창업 의지 등 ¹⁾				저소득층 우대
	백분위 점수	배점 (50점)	취업지원형	배점 (50점)	창업지원형	배점 (50점)	가산점 (10점)
평가 기준	100점~97점	50	취업·창업 준비계획 ²⁾	20	취업·창업 준비 계획 ²⁾	20	저소득층 가산점 세부기준은 대학 자체 수립 ⁴⁾
	96점~93점	48					
	92점~90점	46					
	89점~87점	44	대학 자체기준 ³⁾	30	대학 자체기준 ³⁾	30	
	86점~83점	42					
	82점~80점	40					
	80점 미만	30					

1)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(저소득층 우대 시에만 인정 가능)

2)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[붙임2]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

3) 청년/기술창업 우대, 취·창업 활동 관련 자격증, 관련 강의/강좌 참여 여부, 자체 면접 등 대학에서 세부 내용 및 배점을 자유롭게 규정하여 평가 가능

4) 저소득층 우대 가산점은 필수로 반영하되 세부사항(평가기준 등)은 대학 자체기준 마련

○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신청자 필수서류이며, 미제출 시 대학심사 탈락 처리(단, 신청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하여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발 가능)

○ 학생 취·창업의지 항목은 평가기준별 배점 내에서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

○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및 학·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선발자로 추천

※ 단, 전공심화·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최종 선발

○ 특정 계열·학과로 장학생이 편중되지 않고, 정규학기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추천되도록 권장

○ 대학 자체기준 수립 시 저소득층 우대 기준을 반영하고, 학생이 재단에서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가산점 적용

※ 저소득층 우대 가산점은 필수로 반영하되 세부사항(평가기준 등)은 대학 자체기준 마련

□ (계속장학생) 계속장학생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

-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*을 이수하고,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

*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

*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

□ (수혜횟수) 선발 학기 소속학과 학년제별로 장학금 수혜횟수 제한

-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수혜 횟수(①) 및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(②)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
- 재단 장학금 수혜 시 모두 지원 횟수에 포함하나, 국가근로장학금 ·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제외
- 신규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, 대학은 이연 장학금(전액)을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

〈 학제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횟수 〉

구분		2년제	3년제	4년제	5년제	6년제
일반대	희망사다리 1유형 수혜 횟수(①)	-	-	4회	6회	8회
	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(②)			8회	10회	12회
전문대	희망사다리 1유형 수혜 횟수(①)	2회	4회	6회	8회	10회
	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(②)	4회	6회	8회	10회	12회

*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,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최대 2회로 산정함

□ (기타사항) 계속장학생 자격상실자(포기자 포함) 및 수혜종료자*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

* 신규장학생 선발 후 장학금 수혜를 완료한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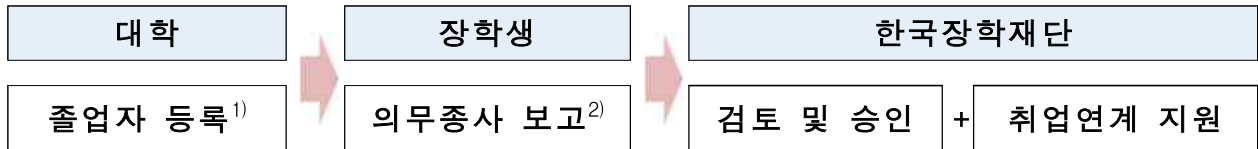
- 단,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진학(편입)한 경우, 전공심화 및 편입 첫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

4 장학생 의무사항

- (의무종사 이행) 장학금 수혜 학생은 졸업 후 의무종사 기간 동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상태를 유지해야 함
 - 의무종사 기간 : 장학금 수혜 횟수(학기) × 6개월(180일)
 -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(환수) 처리
- (직무기초교육 이수)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은 수혜 학기마다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함
 - 수혜 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,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
 - ※ 단계별 상세 이수·증빙 방법 및 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고
 - 미이수 시, 해당 학기에 지급된 취·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
- (학적유지)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은 재학생에 한해 지원
 -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
 -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3년(6개 학기)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
- (정보제공 동의)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
 - ※ 보증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재단 지원
 - ※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후 보증보험 가입 지원

5 사후관리

-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·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,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또는 환수



1) 학자금지원시스템 > 공통 > 학적상태관리 > 졸업/수료정보관리 > 등록

2)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> 희망사다리장학금 > 의무종사관리 > 보고

※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되는 장학생은 의무종사 보고면제 가능

- (장학금 반환) 업무처리기준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약정서에서 정한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, 장학생이 자발적으로 반환금액을 재단에 상환

< 학적 구분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사유 및 반환 기한 >

구분	재학 중 반환	졸업 후 반환
반환 사유	- 자퇴/제적 등 소속대학 학적이 소멸 -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 - 장학금 포기 신청 - 직무 기초교육 미이수 - 학자금 중복지원 발생	- 의무종사 미완료 - 의무종사 포기 - 재학 중 발생한 반환사유를 졸업 전까지 미해소한 경우
반환 기한	- 반환 사유 발생 즉시 장학금 반환을 원칙으로 함 - 단,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에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즉시 반환	- 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의무종사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즉시 기수혜 장학금을 재단으로 반환하여야 함 - 취·창업지원금의 경우 교육 미이수 할 경우 즉시 전액 반환

※ 오선발(허위정보 기재, 심사오류 등)의 경우 사유 발생 즉시 반환

- ☐ (장학금 환수)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보증보험 청구 또는 소송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해당 금액을 회수
-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자
 - 자퇴/제적자
 -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
 - 그 외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
- ☐ (면제) 장학금 수혜 이후 사망, 장애, 질병으로 장학생의 의무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장학금 반환(환수) 면제 가능

6 추진일정

- ☐ (1학기) 신청접수('25. 2~3월) 및 장학금 지급('25. 3~5월)
- ☐ (2학기) 신청접수('25. 8~9월) 및 장학금 지급('25. 10~12월)

일정 내용	1/4분기			2/4분기			3/4분기			4/4분기		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- 사업계획 수립	○											
- 장학생 모집		○	○					○	○			
- 장학생 심사 / 장학금 지급			○	○	○					○	○	○
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